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의3제1항제3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및 제6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법 제9조제1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49인을 말한다. 이 경우 49인을 계산할 때”를 “법 제9조제19항에 따라 100인을 계산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후단”을 “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별표 2 제4호가목·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다음 각 호의 요건”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6조제8항에 따른 사항”을 “다

음 각 호의 요건”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최근 5년간 법 제20조의2에 따른 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투자일임업(투자일임업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등록의 직권말소를 받은 본인이거나 그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가 아닐 것

1. 제5항제1호

2. 별표 2 제4호 가목·라목 및 마목. 이 경우 같은 표 같은 호 가목 중 “인가”는 “등록”으로, “인가 받으려는”은 “등록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3년”은 “2년”으로 본다.

1. 제16조제8항 각 호

2. 제5항제1호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중 “대차대조표상”을 “재무상태표상”으로 한다.

제6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의3나목 2) 중 “를 교부한”을 “또는 법 제249조의4제2항에 따른 핵심상품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를 교부한“으로 한다.

5.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법 제249조의7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

기구등”을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7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제3영업일”을 각각 “3영업일”로 한다.

제77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77조의5제2항제1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5호의2 · 제8호의3 및 제8호의4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법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3다목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법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한다)”로 한다.

제87조제4항제1호 중 “투자설명서를”을 “투자설명서 또는 핵심상품설명서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6 및 제8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6.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금전을 대여할 때 금전을 대여받은 자(금전을 대여받기로 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출의 증개·주선 또는 대리업무의 대가로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행위

8의7. 제8호의6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

위로서 이면계약 체결,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제9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및 제7호”를 “제1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3. 주된 투자대상 자산 현황(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투자대상범위
상위 10개 종목을 포함한다)
4. 집합투자기구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5. 동일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현황
6. 집합투자기구의 위기상황별 예상되는 유동성 위험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집합투자
기구의 운용위험에 대한 관리방안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제93조제3항제3호 중 “제262조제1항 후단”을 “제262조의2제1항 본
문”으로 한다.

제118조제4항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37조제1항제5호가목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76조의12제5항 중 “제3영업일”을 “3영업일”로 한다.

제176조의13제3항 중 “제3영업일”을 “3영업일”로 한다.

제226조제2항 중 “대차대조표상”을 “재무상태표상”으로 한다.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를”을 “경우(법 제249조의8제2항제3호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할 때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29조 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로서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제255조제3항 중 “제2영업일”을 “2영업일”로, “제3영업일”을 “3영업일”로 한다.

제260조제1항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62조의 제목 중 “계산과 공고”를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38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공고 · 계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그 공고 · 계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를 “기준가격 계산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그 기준가격 계산일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고 · 게시한 기준가격”를 “기준가격”으로, “변경한 후에 다시 공고 · 게시(처음에 공고 · 게시한 기준가격과 변경된 기준가격의 차이가 처음에 공고 · 게시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를 “변경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2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2조의2(기준가격의 공고) ① 법 제238조제7항에 따라 기준가격을 공고 · 게시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준가격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기준가격을 지체없이 다시 공고 ·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처음에 공고 · 게시한 기준가격과 변경된 기준가격의 차이가 처음에 공고 · 게시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229조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천분의 2
2. 법 제229조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천분의 3
 - 가. 해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

나. 해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법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만분의 5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천분의 1

② 법 제23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1.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2.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인 경우

3. 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제265조제4항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68조제4항제5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269조제4항 중 “제2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를 말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

2. 제9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현
재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종목명과 수량 등 그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제5편제7장제1절의 제목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
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71조의 제목,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71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전문사모집합투
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문사
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6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일반 사
모집합투자업”으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
투자업”으로 한다.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1. 최근 5년간 법 제20조의2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직권말소를 받은 본인이거나 그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가 아닐 것

1. 제16조제8항제2호

2. 제5항제1호

제271조의3제1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271조의4제4항 및 제5항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한다.

제271조의6의 제목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및 투자광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49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전략, 주요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위험요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4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재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49조의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적정하게 기재하였는지 여부

2. 주된 투자대상자산 · 투자방침과 투자전략 등이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3. 그 밖에 핵심상품설명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249조의4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32조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는 “핵심상품설명서”로 본다.

⑤ 법 제249조의4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서면 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⑥ 법 제249조의4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사항”이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⑦ 법 제249조의4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이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은 자산운용보고서를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에게 제92조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공하고,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가 그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이 핵심상품설명서에서 정한 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⑧ 법 제249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투자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 중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한 사항
2. 법 제249조의4제5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한 내용

⑨ 법 제249조의4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69조제3항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는 “핵심상품설명서”로 본다.

⑩ 법 제24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271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271조의7의 제목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71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종전의 제2항)제4호다목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제6항

(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법 제249조의6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한 경우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인 경우
3.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특수관계인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자로서 출자한 지 분의 합계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에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투자신탁,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나. 투자회사등

다.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제271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1조의10(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

법 제24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0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 사모집합투자
기구가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투자목적회사
의 자기자본 대비 그 투자목적회사가 차입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
으로 운용한 것으로서 법 제249조의7제1항 각 호(같은 항 제2호,
제3호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각각 “투자목적회사”로, “집합
투자재산”은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40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24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자기자본의 산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다.

③ 법 제249조의7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증권을 환매조건부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금액

2. 증권을 차입하여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금액

- ④ 법 제249조의7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 ⑤ 법 제249조의7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가 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⑥ 법 제249조의7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합병·해지 또는 해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 ⑦ 법 제249조의7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뚜렷하게 떨어져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그 토지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 ⑧ 법 제249조의7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2.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을 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⑨ 법 제249조의7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의 연계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의 연계거래를 말한다.

1.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⑩ 법 제249조의7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금전을 대여한 차주의 목적이 국내·외 부동산의 취득·개발·임대·운영·관리 및 개량 등과 이에 준하는 사업(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금전을 대여한 차주의 목적이 국내·외 특별자산의 취득·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 등과 이에 준하는 사업인 경우

⑪ 법 제249조의7제2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제271조의14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⑫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9조의7제2항제4호에 따라 투자자가 제한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 법 제249조의7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외국법인 및 그 종속회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에 상당하는 외국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한 금액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 그 외국법인등을 말한다.

1. 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
2. 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한 금전채권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나 특별자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권리의 행사 등으로 그 기초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⑭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9조의7제3항에 따라 보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⑮ 법 제249조의7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가.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투자대상 자산 현황

다. 집합투자기구의 비시장성 자산(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을 말한다) 투자 현황

라. 동일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현황

마.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현황

바. 집합투자기구의 위기상황별 예상되는 유동성 위험

사.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 현황

2. 제1호 각 목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위험에 대한 관리방안

3.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도 현황

나. 증권의 차입 후 매도 현황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⑯ 법 제249조의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
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4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한도를 초과한 경

우

2.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3.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이 있는 경우(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
는 결정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
자업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 등이 법 제249조의
7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른다.

⑱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3.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사와 유사한 회

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

⑯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 주권 관련 사채권(이하 이 항에서 “지분증권등”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지분증권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지분증권 등을 상호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
3.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⑰ 법 제249조의7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1. 투자계약 등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 투자대상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2. 투자대상기업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 투자 등 정책 결정 또는 업무 집행에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3.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라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지배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제271조의11의 제목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49조의8제3항”을 “제249조의8제4항”으로 하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49조의8제8항”을 “제249조의8제9항”으로 한다.

- ① 법 제249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및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 ② 법 제249조의8제2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말한다.

제271조의12의 제목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편 제7장 제2절의 제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으로 한다.

제271조의1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투자자를 보호하기”를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본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제3자에게 위탁”을 “다음 각 목의 자에게 위탁”으로, “그 제3자와”를 “다음 각 목의 자와”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해당”을 “나목 또는 다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 계약서의 사본의 경우에는 해당”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 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를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다음”을 “제271조의9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제3호, 같은 조 제7항 본문 및 제8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4. 종합금융투자사업자(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부터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5. 법 제249조의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그 사실

가. 업무집행사원

나. 신탁업자

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종합금

용투자사업자로부터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제5호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집합투자증권 총수”는 “출자총액”으로, “투자”는 “출자”로, 제2호 및 제3호 중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업무집행사원”으로, 제5호 중 “투자자”는 “사원”으로 본다.

제271조의14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271조의18제3항 각 호”를 “제271조의20제9항제6호 각 목”로 하고,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이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1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임원 또는 운용인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71조의18제3항 각 호의”를 “제271조의20제5항제6호 각 목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

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보호 및”을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제5항에”를 “제6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까지에서”를 “제11항까지에서”로 한다.

① 법 제249조의11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이 둘 이상의 다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함께 운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둘 이상의 다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취득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하는 경우(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

의 100분의 10 미만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1. 국가
2. 한국은행
3.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0조제3항제9호를 제외한다)
5.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6.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서 제10조제3항제16호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협회에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으로 등록한 법인
7. 제10조제2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8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제271조의15를 삭제한다.

제271조의1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1조의16(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① 법 제249조의1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별
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재산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
구: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2. 집합투자재산 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

구: 매년 12월 31일

② 법 제249조의1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2.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 가.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도 현황
 - 나. 증권의 차입 후 매도 현황
3. 그 밖에 금융시장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71조의17을 삭제한다.

제271조의18을 삭제한다.

제271조의19제2항제2호다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의”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와의”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사원의 이익 보호 및”을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경영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249조의13제1항제2호의 목적으로 운용하고 남은 투자목적회사 재산을 법 제249조의1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를 “제249조의7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투자목적회사가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를 “투자목적회사(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가 법 제249조의7제5항 제1호”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제271조의2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 ① 법 제249조의1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법, 이 영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1. 「은행법」
2. 「한국산업은행법」
3. 「중소기업은행법」
4. 「한국수출입은행법」
5. 「보험업법」
6. 「상호저축은행법」
7. 「여신전문금융업법」
8. 「신용보증기금법」
9. 「기술보증기금법」
10. 「신용협동조합법」
11. 「새마을금고법」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15. 「부동산투자회사법」
16. 「선박투자회사법」
17. 「산업발전법」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② 법 제249조의14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업무집행사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업무집행사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하는 투자
2. 제1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권 관련 사채권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
 - 가. 법 제249조의7제5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과 주권 관련 사채권의 전환권·신주인수권 등의 행사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정한 발행주식을 말한다)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의 10 이상이 되는 투자

나.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

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로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에 대한 투자

가. 투자대상기업(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

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

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환율 변동

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

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대

한 투자

6.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투자목적회사가 제1호 또

는 제4호에 따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투자대상기업의 금전채권에 대한 투자(제1호에 따른 투자를 목적

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투자대상기업이 보유하는 부동산(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임차

권 · 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또는 금전채권 등에 대한 투자

9.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③ 법 제249조의14제2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은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제5항운용하고 남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2.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회사를 포함한다)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재산을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증권 외의 증권에 투자하는 방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운용하는 방법

가.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나.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다.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금전의 대여

④ 법 제249조의14제2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

분의 50 이상을 제2항제1호·제4호 또는 제6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이 제2항제1호에 따라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을 취득하기에 부족한 경우

2. 제2항제9호에 따른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3.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법 제249조의14제2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이 운용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지분증권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하며,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는 그 지분증권등을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 이를 처분할 수 있다.

1. 투자대상기업의 영업이 정지된 경우

2. 투자대상기업이 3개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3.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법 제249조의14제2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이 운용하는 기관전

용 사모집합투자기구(법 제249조의13제1항제3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된 자를 포함한다)는 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하며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는 그 지분증권을 처분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5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⑦ 법 제249조의14제2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이 운용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등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등 전부를 다른 자(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출자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같은 자로부터 출자에 의한 지배를 받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6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고 금융위원회에 자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등의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증권시장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등의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중단된 경우

2.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⑧ 그 밖에 법 제249조의14제2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지분증권 등의 소유 및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⑨ 법 제249조의14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관을 위반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벗어나는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업무집행사원의 고유재산 운용에 이용하는 행위

4. 특정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나 투자목적회사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법 제249조의11부터 제249조의18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가. 투자대상기업의 선정이나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또는 선정 업무

나.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에는 그 가격·시기·방법 등을 결정하는 업무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이나 투자목적회사재
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업무

라.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
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7.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실행을 담당하는 직원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한 운용과 실행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8. 영 제271조의21제3항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
자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
무를 하는 행위

⑩ 법 제249조의14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
월을 말한다.

제271조의21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
고, 같은 조 제8항을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운용인력””을 ““투자 운용전문인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2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까지”를 “제11항까지”로, “업무집행사원등록”을 “등록요건의 관하여 필요한 사항, 업무집행사원 등록”으로 한다.

③ 법 제249조의1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운용전문인력”이란 상근임직원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운용전문인력을 말한다.

⑨ 법 제249조의15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및 이 영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보고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⑩ 법 제249조의15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⑪ 법 제249조의15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71조의13제1항제2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71조의22제1항제3호가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271조의15 제1항”을 “제271조의10제19항”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의 이익 및”을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거래”를 “거래.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업무집행사원”으로 본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의 이익 및”을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71조의23의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71조의24제2항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71조의2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1조의25(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20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한책임사원으로 한정한다)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

자자분 현황

2. 제1호의 보유 출자자분비율이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이상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 사항
 3. 제1호의 유한책임사원의 명칭, 사업내용, 재무현황,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반현황
 4. 그 밖에 유한책임사원의 현황과 관련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법 제249조의20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란 법 제249조의18제2항 본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본다.

제271조의26의 제목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71조의27의 제목,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항제4호 중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제249조의22제3항 전단”을 각각 “제249조의22제3항”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제5호 중 “사원의

이익을 침해할”을 “투자자 보호,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로 한다.

제271조의28의 제목,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항제1호 중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제249조의23제3항 전단에서”를 각각 “제249조의23제3항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투자자 보호와”를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으로 한다.

제37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한다.

1의2. 법 별표 1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1. 금융투자업자의 인가 또는 등록업무에 대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로 인해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곤란한 경우
7.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제1호·제2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87조의2제1항제25호의2 및 제25호의3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88조의2제1항제1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6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의2 및 제16호의3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의3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별표1 비고 제14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한다.

별표2 제1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의 요건란 가목 및 다목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마목 3) 본문 중 “독립경영자에 해당하거나 같은 목에 따라”를 “독립경영친족 또는 같은 항 제2호의2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임원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2호가목 또는 제2호의2나목에 따라”로 한다.

별표3 금융투자업의종류란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한다.

별표10의 제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제271조의20제9항제6호를 위반하여 같은 호 각 목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별표13의2 제1호의 구분란 가목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표20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65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며, 같은 표 제71호의3부터 제71호의15까지를 각각 제71호의4부터 제71호의16로 하고, 같은 표에 제7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71호의9(종전의 제71호의8), 제71호의10(종전의 제71호의9) 및 제71호의11(종전의 제71호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71호의4(종전의 제71호의3) 및 제71호의6(종전의 제71호의5)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표 제71호의7(종전의 제71호의6) 및 제71호의14(종전의 제71호의13)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제71호의14(종전의 제71호의13) 중 “투자자 보호 와”를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으로 하며, 같은 표 제142호의2부터 제142호의5까지를 각각 제142호의3부터 제142호의6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4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142호의6부터 제142호의9까지를 각각 제142호의8부터 제142호의11로 하고, 같은 표에 제142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142호의4(종전의 제142호의3)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42호의8(종전의 제142호의6)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142호의9(종전의 제142호의7)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60호 중 “제71호의15까지”를 “제71호의16까지”로, “제142호의9까지”를 “제142호의7까지”, 제142호의9부터 제142호의11까지”로 한다.

4의2.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보 요청

71의3. 법 제249조의4제6항 본문에 따른 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7항 전단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71의9. 법 제249조의12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71의10. 법 제249조의14제7항 전단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 · 보완 명령

71의11. 법 제249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접수,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내용의 검토, 등록여부 결정 및 신청인에 대한 문서 통지,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흠흑결에 대한 보완 요구,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취소, 같은 조 제8항 전단에 따른 변경 보고의 접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보고내용 흠흑결에 대한 보완 요구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재무제표 제출의 접수

142의2. 제271조의2제10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접수

142의7. 제271조의20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른 각각의 승인, 같은 조 제7항 본문에 따른 보고의 접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승인

별표22 제2호 시목 중 “제249조의7제3항”을 “제249조의7제3항, 제249조의1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지목부터 며목까지를 각각 치목부터 벼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 법 제249조의15제8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449조 제3항제10호의2 및 제10호의3	3,000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정 · 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 계산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설정 · 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함께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에서 추가로 취득하여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기

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투자자의 수를 계산한다.

제3조(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5항제2의3호나목, 제87조제4항제1호, 같은 항 제8의6호 및 제8의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집합투자업자가 같은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보고서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 제8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일이 이 영 시행 이후에 도래하는 자산운용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영 제271조의6에 따라 투자광고를 한 경우 해당 투자광고의 대상과 방법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적용례) 제271조의20제9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업무집행사원이 같은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8항제9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1 제126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한다.

③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④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나목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마목 3) 및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16조제2호나목 및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25조제2호나목 및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26조제1호나목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36조제2호나목 및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36조제3호바목 3) 및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제7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⑥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바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라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⑦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⑧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1호 · 제2항 · 제4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⑩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4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8조의3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 ⑪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 제3호 중 “경영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 제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 가목 · 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 제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 가목 · 나목 · 다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 제6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 제9조의 제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 가목 · 나목, 같은 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 제12조제2항제7호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라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1조의3의 제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33조의4제9호 및 같은 조 제36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1 제1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1 제3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1 제7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1 비고 제1호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2 제7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2 비고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⑫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제4호 본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으로 한다.

별표1 제3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1 제7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1 비고 제1호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투자전문회사”를 “투자목적회사”로

한다.

⑬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중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⑭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호 중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⑮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8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1 제1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1 제2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1 제5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1 비고 제3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⑯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0 제2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투자
제1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
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
구”로 한다.

별표3의 제목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4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
다.

⑯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4항제3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
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1 제1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1 제2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1 제5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1 비고 제1호 단서 및 제4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2 제5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2 비고 제1호 단서 및 제4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3 제5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3 비고 제1호 단서 및 제4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⑯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제2호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1의2 제3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1의2 제6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1의2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투자전문회사”를 “투자목적회사”로 한다.

⑯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6조제2항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1 제1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1 제2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1 제5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1 비고 제1호 단서 및 제4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제2호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⑪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24조의8의 제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제7호·제2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1 제7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1 비고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㉒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㉓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㉔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제5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의 기준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의3(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를 말한다.</p> <p>1. · 2. (생 략)</p> <p>3.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u>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u>(이하 “<u>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u>”라 한다)</p> <p>4. (생 략)</p>	<p>제6조의3(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① -----</p> <p>-----</p> <p>-----</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p> <p>--- <u>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u>(----- “<u>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u>”-----)</p> <p>4. (현행과 같음)</p>

하거나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
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이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라 한다)에 출자(투
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수익증
권의 매수를 포함한다. 이하
제271조의11제2항제2호 단
서에서 같다)를 하는 업무

제14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① (생략)
② 법 제9조제1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49인을 말한다. 이 경우 49인을 계산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제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같은 항 제5호의3에 따른 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

⑤ 법 제18조제2항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 설>

1. · 2. (생략)

⑥ 법 제18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별표 2 제4호가목·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표 같은 호 가목 중 “인가”는 “등록”으로, “인가 받으려는”은 “등록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3년”은 “2년”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⑤ -----.

-----.

1. 최근 5년간 법 제20조의2에 따른 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투자일임업(투자일임업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등록의 직권말소를 받은 본인이거나 그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가 아닐 것

2. ·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⑥ -----

----- 다음 각 호의 요건 -----. <후단 삭제>

1. 제5항제1호

2. 별표 2 제4호 가목·라목 및 마목. 이 경우 같은 표 같은

⑦ 법 제18조제2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제16조제8항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⑧ · ⑨ (생 략)

제35조(경영건전성기준) ① (생 략)

②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생 략)

2. 위험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투자업자

가. 최근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투자

호 가목 중 “인가”는 “등록”으로, “인가 받으려는”은 “등록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호라목 중 “3년”은 “2년”으로 본다.

⑦ -----

----- 다음 각 호의 요건-----.

1. 제16조제8항 각 호

2. 제5항제1호

⑧ · ⑨ (현행과 같음)

제35조(경영건전성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재무상태표상-----

자예탁금을 뺀 금액을 말 한다)이 1천억원 이상일 것	----- -----)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 ----- ----- ----- --.
1. ~ 4의4. (생 략)	1. ~ 4의4. (현행과 같음)
5. <u>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u> <u>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u>	5. <u>사모집합투자기구</u> <u>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법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u>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 ----- ----- ----- --.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고난도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	2의3. -----(- ----- ----- -----)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생 략)

나. 개인인 투자자에게 고난
도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해당 투
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요약한 설명서를 내
어 주지 않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생략)

2)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시
법 제124조제2항제3호
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이하 “간이투자설명서”
라 한다)를 교부한 경우

1) (현행과 같음)

2) -----

(-----
-----) 또는 법
제249조의4제2항에 따
른 핵심상품설명서(이하

<p>반사무관리회사를 말한다.</p> <p>③ · ④ (생 략) 제7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등)</p> <p>① (생 략)</p> <p>② 법 제77조의3제5항 단서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방법에 따라 <u>전문투자형</u> <u>사모집합투자기구등</u>으로부터 받은 담보를 활용하여 제삼자 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신용 공여를 하는 경우</p> <p>2. · 3. (생 략) ③ ~ ⑥ (생 략)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 외 등) 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 5. (생 략)</p>	<p>----- -----.</p> <p>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 ----- <u>일반</u> <u>사모집합투자기구등</u> ----- ----- ----- ----- -----.</p> <p>2. · 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 외 등) ① ----- ----- -----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	---

5의2. 법 제81조제1항제3호가
목을 적용할 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
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
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자
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여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이
하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
기구”라 한다)가 같은 집합투
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
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
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
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
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
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
하는 행위

5의3. 법 제81조제1항제3호가
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
자기구 등의 집합투자증권(라

5의 2. ----- 법 제249
조의 7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
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집
합투자기구(-----
-----)
-----)
-----)
-----)
-----)
-----)
-----)
-----)
-----)

5의 3. -----

목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3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등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 · 나. (생 략)

다. 부동산 또는 나목에 따른
특별자산에 자산총액의 10
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
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

----- (-----

-----) -----

----- (-----

-----)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 일반 사모집합
투자기구(법 제249조의7)
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에 합한다)

<p>④ 법 제8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④ ----- ----- ----- -----.</p>
<p>1. 집합투자규약이나 <u>투자설명서</u>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2. ~ 8의5. (생략)</p>	<p>1. ----- <u>투자설명서</u> 또는 <u>핵심상품설명서</u>를 ----- 2. ~ 8의5. (현행과 같음)</p>
<p><u><신 설></u></p>	<p>8의6.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금전을 대여할 때 금전을 대여받은 자(금전을 대여받기로 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의 대가로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행위</p>
<p><u><신 설></u></p>	<p>8의7. 제8호의6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이면계약 체결,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p>
<p>9. (생략) 제92조(자산운용보고서) ① · ② (생략) ③ 법 제88조제2항제5호에서</p>	<p>9. (현행과 같음) 제92조(자산운용보고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p>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법 제8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제2호 및 제7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4. 집합투자기구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5. 집합투자기구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6.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범

-----.
---, -----

-----(-

-----)

----- 제1호 및 제8호

1.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3. 주된 투자대상 자산 현황(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투자대상범위 상위 10개 종목을 포함한다)
4. 집합투자기구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5. 동일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현황
6. 집합투자기구의 위기상황별

는 매출한 증권의 상환 또는 소각을 완료한 법인 및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만을 발행한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대차대조표와 그 부속 명세서

나. ~ 라. (생 략)

② ~ ⑥ (생 략)

제176조의12(전환형 조건부자본 증권의 발행 등) ① ~ ④ (생 략)

⑤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전환은 전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 ~ ⑧ (생 략)

제176조의13(상각형 조건부자본 증권의 발행 등) ① · ② (생 략)

③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은 채무재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가. 재무상태표-----

나. ~ 라.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76조의12(전환형 조건부자본 증권의 발행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3영업일-----

-----.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76조의13(상각형 조건부자본 증권의 발행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3영업일--

-----.

<p>④ (생 략)</p> <p>제226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생 략)</p> <p>②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법 제193조제8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합병가액은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날의 전날의 <u>대차 대조표상</u>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p> <p>③ ~ ⑥ (생 략)</p> <p>제242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① (생 략)</p> <p>② 법 제23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제226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u>재무상태표상</u>----- ----- -----.</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242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경우(법 제249조의8제2항제3호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할 때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 -----. ---, ----- ----- ----- ----- ----- -----.</p>
--	--

<p>1. ~ 4. (생 략) <u><신 설></u></p> <p>제255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① · ② (생 략) ③ 법 제236조제1항 본문의 환매청구일 후에 산정되는 기준가격은 환매청구일부터 기산하여 제2영업일(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일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시점을 지나서 환매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3영업일을 말한다) 이후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준가격으로 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 <u>5.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29조 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로서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u></p> <p>제255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2영업일(----- ----- ----- ----- ----- ----- 3영업일-----) ----- ----- ----- -----</p>
--	---

<p>④ · ⑤ (생 략)</p> <p>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p>	<p>-----.</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① -----</p> <p>-----</p> <p>-----(- -----)</p> <p>-----.</p>
<p>1. <u>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u>가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지분증권의 취득가격</p>	<p>1. <u>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u>가 법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 -----</p>
<p>2. · 3. (생 략)</p> <p>②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p>	<p>2. · 3. (현행과 같음)</p> <p>② -----</p>

액"이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업무집행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③ · ④ (생략)

제262조(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① 법 제23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238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공고·계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법 제238조제1항에 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 -----

-----.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62조(기준가격의 계산) ① -----

----- 기준가격 계산일
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
산총액(법 제238조제1항에 따
른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것을

른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그 공고·계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261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평가오류의 수정에 따라 공고·계시한 기준가격이 잘못 계산된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지체 없이 변경한 후에 다시 공고·계시(처음에 공고·계시한 기준가격과 변경된 기준가격의 차이가 처음에 공고·계시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1. 법 제229조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 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
에 투자하는 경우: 1천분의

2. 법 제229조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작제>

〈삭 제〉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천분의 3

가. 해외 증권시장에서 거래 되는 지분증권

나. 해외 증권시장에서 거래 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

3. 법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만분의 5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천분의 1

② ~ ④ (생략)

⑤ 법 제23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1.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2. 사모투자재간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삭 제>

<삭 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3. 부동산 · 특별자산투자재간

집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신 설>

제262조의2(기준가격의 공고) ①

법 제238조제7항에 따라 기준가격을 공고 · 게시한 투자신탁이나 투자의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준가격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기준가격을 지체없이 다시 공고 ·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처음에 공고 · 게시한 기준가격과 변경된 기준가격의 차이가 처음에 공고 · 게시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229조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천분의 2

2. 법 제229조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천분

의 3

가. 해외 증권시장에서 거래
되는 지분증권

나. 해외 증권시장에서 거래
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
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

3. 법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
우: 1만분의 5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집
합투자기구 외의 집합투자기
구의 경우: 1천분의 1

② 법 제23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는 것이 곤
란한 경우를 말한다.

1.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2.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
구인 경우

3. 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
접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p>① ~ ③ (생 략)</p> <p>④ 회계감사인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이나 투자의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p> <p>1. 집합투자재산의 <u>대차대조표</u></p> <p>2. ~ 4. (생 략)</p> <p>⑤ ~ ⑦ (생 략)</p> <p>제268조(증권의 예탁 등) ① ~ ③ (생 략)</p> <p>④ 법 제24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 중 금융기관에 예치한 총금액 또는 단기대출한 총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p> <p>1. ~ 4의2. (생 략)</p> <p>5.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자가 <u>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u></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p> <p>1. ----- <u>재무상태표</u></p> <p>2. ~ 4. (현행과 같음)</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p>제268조(증권의 예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p> <p>1. ~ 4의2. (현행과 같음)</p> <p>5. -----</p> <p>----- <u>일반 사모집합투자기</u></p>
--	---

<p><u>기구등과 전담중개업무로서 하는 거래</u></p> <p>6. · 7. (생 략)</p> <p>제269조(신탁업자 등의 감시의무 등) ① ~ ③ (생 략)</p> <p>④ 법 제247조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u>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를 말한다.</u></p> <p><u><신 설></u></p> <p>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p> <p>제1절 <u>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u></p> <p>제271조(<u>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u></p>	<p><u>구등-----</u></p> <p>-----</p> <p>6. · 7. (현행과 같음)</p> <p>제269조(신탁업자 등의 감시의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p> <p>-----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u></p> <p><u>1. 제2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u></p> <p><u>2. 제9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현재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종목명과 수량 등 그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u></p> <p>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p> <p>제1절 <u>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u></p> <p>제271조(<u>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u></p>
--	---

<p><u>자기구의 투자자</u>) ① (생 략) ② 법 제249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p>	<p>의 투자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p>
<p>1. 법 제249조의7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u>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u>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u>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u>에 투자하는 경우: 3억원</p>	<p>1. ----- ----- <u>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u> ----- ----- ----- <u>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u> ---: -----</p>
<p>2. 제1호 외의 <u>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u>에 투자하는 경우: 5억원</p>	<p>2. ----- <u>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u>----- : - ---</p>
<p>제271조의2(등록의 요건 등) ① 법 제249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p>	<p>제271조의2(등록의 요건 등) ① ----- ----- ----- ----- -----.</p>
<p>1. ~ 3. (생 략) 4. <u>「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u> 5. · 6. (생 략)</p>	<p>1. ~ 3. (현행과 같음) 4. <u>「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u> 5. · 6. (현행과 같음)</p>

<p>② · ③ (생 략)</p> <p>④ 법 제249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p> <p>1. (생 략)</p> <p>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모두 갖출 것</p> <p>가. <u>전문사모집합투자업</u>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p> <p>나. ~ 라. (생 략)</p> <p>⑤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1. · 2. (생 략)</p> <p>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p>-</p> <p>가. <u>일반 사모집합투자업</u>---</p> <p>-----</p> <p>-----</p> <p>나. ~ 라. (현행과 같음)</p> <p>⑤ -----(- -----</p> <p>-----</p> <p>-----)</p> <p>-----</p> <p>-----.</p> <p>1. 최근 5년간 법 제20조의2에 따라 <u>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u>록의 직권말소를 받은 본인이거나 그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가 아닐 것</p> <p>2. ·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p> <p>⑥ -----</p>
---	--

<p>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1. 법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u>전문사모집합투자업</u>을 등록하려는 경우</p> <p>2. <u>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u>가 다른 회사와 합병·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p> <p>⑦ (생략)</p> <p>⑧ 법 제249조의3제2항제6호에서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이란 <u>제16조제8항제2호</u>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p> <p><u><신설></u></p> <p><u><신설></u></p> <p>⑨ (생략)</p> <p>⑩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u>전문사모집합투자업</u>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항에서 “지점등”이라 한다)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등 전부를 하나의 <u>전문사모집</u></p>	<p>-----.</p> <p>1. ----- <u>일반 사모집합투자업</u>-----</p> <p>2. <u>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u>-----</p> <p>⑦ (현행과 같음)</p> <p>⑧ -----</p> <p>-----</p> <p>-----</p> <p>-----</p> <p>-----</p> <p>-----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p> <p>1. <u>제16조제8항제2호</u></p> <p>2. <u>제5항제1호</u></p> <p>⑨ (현행과 같음)</p> <p>⑩ ----- <u>일반 사모집합투자업</u>-----</p> <p>-----</p> <p>-----</p> <p>-----</p> <p>-----</p> <p>-----</p>
--	--

합투자업자로 본다. 이 경우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등을 추가로 두려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 (생략)

제271조의3(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등) 법 제249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249조의3제2항제2호의 경우: 별표 3의 해당 등록 업무 단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월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⑪ (현행과 같음)

제271조의3(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등) -----

1. -----

-----: -----

----- 일반 사모집

합투자업자-----

2. (생 략)

제271조의4(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49조의3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6(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① 법 제249조의5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투자자예탁금 잔액을 포함한다)가 1억 원 이상인 일반

-----.

2. (현행과 같음)

제271조의4(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일반

반 사모집합투자업 -----

-----.

⑤ -----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

-----.

제271조의6(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및 투자광고) ① 법 제249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전략, 주요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위험요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

투자자를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5제2호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체를 통하여 전문투자자 또는 제1항에서 정하는 투자자에게 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신 설>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4제2항 후단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재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49조의4제3항 단서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적정하게 기재하였는지 여부
2. 주된 투자대상자산 · 투자방침과 투자전략 등이 집합투자 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3. 그 밖에 핵심상품설명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 설>

④ 법 제249조의4제4항 본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32조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는 “핵심
상품설명서”로 본다.

<신 설>

⑤ 법 제249조의4제4항 본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서면 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신 설>

⑥ 법 제249조의4제4항 단서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한 사항”이란 투자자의 합리적
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집합투자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을 말한다.

<신 설>

⑦ 법 제249조의4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이란 일반 사모집합투자
기구(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

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은 자산운용보고서를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에게 제92조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공하고,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가 그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이 핵심상품설명서에서 정한 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8) 법 제249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투자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행위 중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한 사항
2. 법 제249조의4제5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 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한 내용

<신 설>

<신 설>

제271조의7(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설정 · 설립 요건)
(생 략)

제271조의9(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49조의6제2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부터 전 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⑨ 법 제249조의4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69조제3항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는 "핵심상품설명서"로 본다.

⑩ 법 제24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271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271조의7(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 · 설립 요건) (현행과 같음)

제271조의9(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

1. ~ 6. (현행과 같음)

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

8. (생 략)

<신 설>

8.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49조의6제2항 단서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법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집합투
자재산을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
합투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1.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
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계열
회사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
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
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한 경우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

열회사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인 경우

3.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의 특수관계인이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
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가 투자자로서 출자
한 지분의 합계가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이 경
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
정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
재산 또는 신탁재산에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경우로 한정한
다.

가. 투자신탁, 투자익명조합
의 집합투자업자

나. 투자회사등

다.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
탁업자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

③ -----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사본. 다만, 나목 또는 다른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을 이미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면 그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 나. (생략)

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문
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가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로부터 전담중개업무를 제
공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five horizontal dashed lines for letter formation.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일)
반 사모집합투자기구-----

--)

<신 설>

합산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40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24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자기자본의 산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③ 법 제249조의7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증권을 환매조건부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금액

2. 증권을 차입하여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금액

④ · 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⑥ -----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⑧ 법 제249조의7제2항제3호

② · ③ (생략)

④ 법 제249조의7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합병 · 해지 또는 해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⑤ (생략)

<신 설>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
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
는 자

2.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을 대
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⑨ 법 제249조의7제2항제3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와의 연계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의
연계거래를 말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자

⑩ 법 제249조의7제2항제4호

<신 설>

<신 설>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금전을 대여한 차주의 목적이 국내·외 부동산의 취득·개발·임대·운영·관리 및 개량 등과 이에 준하는 사업(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금전을 대여한 차주의 목적이 국내·외 특별자산의 취득·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 등과 이에 준하는 사업인 경우

⑪ 법 제249조의7제2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 설>

3. 제271조의14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기관전용 사모집
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 설>

⑫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9조의7제2항제4호에 따라
투자자가 제한되는 일반 사모집
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
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
분의 9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
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⑬ 법 제249조의7제2항제5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외국법인 및 그 종속회
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
항에 따른 종속회사에 상당하는
외국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한 금
액 중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
한 금액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 그 외국법인등을 말한
다.

1. 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발

	<p><u>행한 증권</u></p> <p><u>2. 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한 금전채권</u></p> <p><u>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나 특별자산</u></p> <p><u>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권리의 행사 등으로 그 기초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u></p>
⑥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9조의7제3항에 따라 <u>전문 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라 <u>보고해야</u> 한다.	<p><u>(14)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보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 ----- -----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 보고하여야 -----.</u></p> <p><u><삭 제></u></p> <p><u><삭 제></u></p>
1. 파생상품매매 현황	<u><삭 제></u>
1의2.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현황	<u><삭 제></u>
2.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	<u><삭 제></u>
3. 금전차입 현황	<u><삭 제></u>

4.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
된 위험요인 및 관리방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사항

<신 설>

<삭 제>

⑯ 법 제249조의7제3항제4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
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 가.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나. 투자대상 자산 현황
 - 다. 집합투자기구의 비시장성
자산(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을 말한다)
투자 현황
 - 라. 동일한 집합투자업자가 운
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
한 투자 현황
 - 마.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
에 대한 투자 현황
 - 바. 집합투자기구의 위기상황
별 예상되는 유동성 위험
 - 사.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 현
황
2. 제1호 각 목의 요인으로 인

해 발생할 수 있는 집합투자
기구의 운용위험에 대한 관리
방안

3.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도 현
황

나. 증권의 차입 후 매도 현황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
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삭 제>

⑦ 제6항에 따른 보고의 기준일
은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
월 30일 및 12월 31일로 한다.

⑧ 법 제249조의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
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1. · 2. (생 략)

3.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⑯ -----

-----.

1. · 2. (현행과 같음)

3. -----
----- 경우(법 제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
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⑨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 등이 법 제249조의7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른다.

<신 설>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⑯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

⑰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3.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사와 유

사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

<신 설>

⑯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일반 사모집
합투자기구가 다른 사모집합투
자기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
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
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
주권 관련 사채권(이하 이 항
에서 “지분증권등”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
하는 행위

2. 지분증권등을 공동 또는 단
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지분증권등을 상호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

3.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
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
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
위

⑰ 법 제249조의7제5항제2호

<신 설>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1. 투자계약 등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 투자대상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2. 투자대상기업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 투자 등 정책 결정 또는 업무 집행에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3.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라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지배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제271조의11(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신설>

제271조의11(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및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신 설>

① 법 제249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 2. (생 략)

② 법 제249조의8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3. (생 략)

제271조의12(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 ⑥ (생 략)

제2절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271조의13(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49조의10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② 법 제249조의8제2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말한다.

③ -- 제249조의8제4항-----

-----.

1. · 2. (현행과 같음)

④ -- 제249조의8제9항 ---

--.

1. ~ 3. (현행과 같음)

제271조의12(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 ⑥ (현행과 같음)

제2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제271조의1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등)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
한 사항

<신 설>

<신 설>

4.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
한 경우에는 그 제3자와 체결
한 업무위탁계약서의 사본. 다

-----.

1. · 2. (현행과 같음)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4. 종합금융투자사업자(기관전
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종
합금융투자사업자로부터 전담
중개업무를 제공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5. 법 제249조의 제5항 제1호 또
는 제2호의 방법으로 집합투
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그
사실

6. ----- 금융시장의 안정 또
는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다음 각 목의

자에게 위탁----- 다음

각 목의 자와-----

만,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을 이미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면 그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4.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
합투자기구 사원의 이익을 보
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
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와 그 업무집행사원의 법인 등
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다.

----- . ---, 나목 또는
다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
계약서의 사본의 경우에는 해
당 -----

가. 업무집행사원

나. 신탁업자

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부터 전담중개업무를 제공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금융시장의 안정 또
는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

(3) -----

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

<p>④ (생 략)</p> <p>⑤ 법 제249조의10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u><후단 신설></u></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p> <p>----- 법 제249조의7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7 1조의9제2항 -----</p> <p>-----</p> <p>- .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3 호 및 제5호 중 “일반 사모집합 투자기구”는 각각 “기관전용 사 모집합투자기구”로, “집합투자 증권 총수”는 각각 “출자총액”으로, 제2호 및 제3호 중 “집합 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각각 “업무집행사원”으로, 제5 호 중 “투자자”는 “사원”으로 본다.</p> <p>1. ~ 5. (생 략)</p> <p>⑥ 법 제249조의10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p> <p>1. · 2. (생 략)</p>
	<p>1. ~ 5. <삭제></p> <p>⑥ -----</p> <p>-----</p> <p>-----</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그 밖에 <u>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u>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p>⑦ <u>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u>는 제6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었던 해당 사업연도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u>의 보고서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71조의14(사원 및 출자) <신설></p>	<p>3. ----- <u>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u>----- ----- ----- ---</p> <p>⑦ <u>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u> ----- ----- ----- ----- -----. ---, ----- ----- ----- ----- ----- ----- -----. ⑧ ----- ----- <u>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u>----- ----- ----- ----- -----.</p> <p>제271조의14(사원 및 출자) ① <u>법 제249조의11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u></p>
--	---

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

기구가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
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
용하는 업무집행사원이 둘
이상의 다른 기관전용 사모집
합투자기구를 함께 운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둘 이상의 다
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
구가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
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
을 위한 취득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
의 100분의 10 미만을 취득
한 경우에 한한다)

① (생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란 제271조의1
8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249조의11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제2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제271
조의20제9항제6호 각 목
-----.

④ -----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

1. 국가

2. 한국은행

3.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
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4.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
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제10조제3항제9호를
제외한다)

5.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6.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
다)으로서 제10조제3항제16
호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
족하고 협회에 기관전용 사모
펀드의 유한책임사원으로 등
록한 법인

<신 설>

④ 법 제249조의11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이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1억 원

2. 제1호 외의 자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3억 원

⑤ (생략)

⑥ 법 제249조의11제8항에서 “해당 유한책임사원 관련 정보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7. 제10조제2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8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이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1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임원 또는 운용인력-----.

<삭 제>

<삭 제>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게 된 날
부터 3영업일을 말한다.

⑧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경영참여
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
는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
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경영참
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기업이 오로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설립 중인 회
사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
하여 출자할 수 있다.

⑩ (생략)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원의 출자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한다.

제271조의15(경영참여형 사모집

----- 제6항에 -----

-----.

⑨ -----
-----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기관전용 사모집
합투자기구 -----

-----.

⑩ 제9항----- 기
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
-----)
----- 기관전용 사모집
합투자기구 -----

-----.

⑪ (현행 제10항과 같음)

⑫ ----- 제11항까지에서

-----.

〈삭 제〉

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① 법 제249조의1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 주권 관련 사채권(이하 이 항에서 “지분증권등”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지분증권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지분증권등을 상호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

3.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②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3.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5. 외국법인 및 그 종속회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에 상당하는 외국회사를 말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한 금액 중 다음 각 목의 자산을 합한 금액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그 외국법인
 - 가. 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
 - 나. 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한 금전채권
 - 다.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나 특별자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권리의 행사 등으로 그 기초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사와 유사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

③ 법 제249조의1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주권 관련 사채권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1.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과 주권 관련 사채권의 전환권 · 신주인수권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취득 할 수 있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정한 발행주식을 말한다)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있
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투자

2. 투자계약 등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
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④ 법 제249조의12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이란 법 제5조제
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⑤ 법 제249조의12제1항제7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1. 투자대상기업의 금전채권에
대한 투자(법 제249조의12제
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투자대상기업이 보유하는 부

동산(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임차권 · 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들 포함한다) 또는
금전채권 등에 대한 투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
설에 대한 투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투자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
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설
비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
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설
비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
5조의2제1항에 따른 에너
지 절약시설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2
5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
보전시설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2
5조의4제1항에 따른 의약

품 품질관리개선시설

제271조의16(여유자금의 운용방법 등) ① 법 제249조의1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대출”이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1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회사를 포함한다)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를 말한다.

제271조의16(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방법 등) ①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 보고하는 것-----.

1. 집합투자재산 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2. 집합투자재산 총액이 100억 원 미만인 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 매년 12월 31일

②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법 제249조의12제2항제3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④ 법 제249조의12제2항제3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
권”이란 법 제4조제1항 각 호
의 증권 외의 증권을 말한다.

⑤ 법 제249조의12제2항제4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
증서

2.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2.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도 현
황

나. 증권의 차입 후 매도 현황

3. 그 밖에 금융시장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
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삭 제>

<삭 제>

<삭 제>

어음(기입어음증권은 제외한
다)

3.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금전의
대여

제271조의17(경영참여형 사모집

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
용제한 등) ① 법 제249조의12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하
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12제3항 단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 집합투자재산이 법 제249
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
호에 따라 투자대상기업의 지
분증권을 취득하기에 부족한
경우

2. 제271조의15제5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설비에 투자하는 경
우

3.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삭 제>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법 제249조의12제4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주권 관련 사채권을 말한다.

④ 법 제249조의12제4항 단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대상기업의 영업이 정지된 경우

2. 투자대상기업이 3개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3.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법 제249조의12제5항 단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249조의12제6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⑦ 법 제249조의1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중단된 경우

2.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⑧ 법 제249조의1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의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말한다.

⑨ 법 제249조의12제9항에 따른 보고의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집합투자재산 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영참여형 사모집

합투자기구: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2. 집합투자재산 총액이 100억 원 미만인 경영참여형 사모집
합투자기구: 매년 12월 31일
⑩ 제9항에 따른 보고의 서식
및 절차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18(투자비율의 산정방
식 등) ① 법 제249조의12제1
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각각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법 제249조의12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투자비율은 「국가재정법」 별
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
금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의 사원이 되는 경우로서
제271조의14제10항에 따라 출
자의 이행을 요구하는 때에 출
자하기로 약정하는 방식 외의
방법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금에 대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
산할 수 있다.

<삭 제>

1. 법 제249조의12제2항제3호

에 따른 비율을 계산하는 경
우: 기금의 출자금 범위에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금액과 그 증권취득금액
을 각각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법

2. 법 제249조의12제3항 본문

에 따른 비율을 계산하는 경
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재산에서 기금
의 출자금액을 제외하고 계산
하는 방법

③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의 업무집행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
무를 제3자에게 위탁해서는 아
니 된다.

1. 투자대상기업의 선정이나 투
자목적회사의 설립 또는 선정
업무

2.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
회사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시기·방
법 등을 결정하는 업무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 집합투자재산이나 투자목적회사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업무

4. 그 밖에 사원의 이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 법 제249조의12제3항 단서, 제4항 단서, 제5항 단서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에 필요한 신청서식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19(투자목적회사) ①
(생 략)

② 법 제249조의13제1항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 나. (생 략)

다.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제271조의19(투자목적회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의
합의 또는 계약 등에 따라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
하는 기업의 경영에 공동
으로 참여할 것

라. 그 밖에 사원의 이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③ 법 제249조의13제3항 후단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투자목적회사가
차입 또는 채무보증을 하는 경
우에 그 합계액은 제1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자기자본의 10
0분의 300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자기자본의 산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한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가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
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이 되
는 투자목적회사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
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와의-----

라. ----- 투자자 보호와 금
융시장의 안정 또는 -----

<삭 제>

2. 제1호의 투자목적회사가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이 되는 투자 목적회사

④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은 제271조의1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⑤ 투자목적회사는 그 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게 그 회사의 재산의 운용을 위탁하여야 한다.

⑥ 투자목적회사는 법 제249조의13제1항제2호의 목적으로 운용하고 남은 투자목적회사 재산을 법 제249조의1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⑦ 투자목적회사가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삭 제>

⑤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

⑥ ----- 제249조의7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⑦ 투자목적회사(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가 법 제24

에는 그 지분증권에 대한 평가는 제2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⑧ 법 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49조의12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필요한 신청서식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
① 법 제249조의1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법, 이 영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1. ~ 12. (생략)

1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14. ~ 18. (생략)

<신설>

9조의7제5항제1호 -----

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

<삭제>

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
① -----

-----.

1. ~ 12. (현행과 같음)

1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

14. ~ 18.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49조의14제2항 후단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업무집행사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업무집행사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하는 투자

2. 제1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권 관련 사채권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가. 법 제249조의7제5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과 주권 관련 사채권의 전환권 · 신주인수권 등의 행사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정한 발행주식을 말한다)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0 이상이 되는 투자

나.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로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에 대한 투자

가. 투자대상기업(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

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
설투융자회사가 발행한 증권
에 대한 투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
설에 대한 투자

6.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투자목적회사가 제
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투자
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해
당한다)

7. 투자대상기업의 금전채권에
대한 투자(제1호에 따른 투자
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해
당한다)

8. 투자대상기업이 보유하는 부
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
·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을 포함한다) 또는
금전채권 등에 대한 투자

9.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신 설>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③ 법 제249조의14제2항에 따
른 업무집행사원은 제2항 각 호
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남은 기
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
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
대출

2.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
사(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회
사를 포함한다)와 「우체국예
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30 이내
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법 제
4조제1항 각 호의 증권 외의
증권에 투자하는 방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운

용하는 방법

가.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

금증서

나.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

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다.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금
전의 대여

④ 법 제249조의14제2항에 따
른 업무집행사원은 기관전용 사
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이 출자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2
항제1호·제4호 또는 제6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
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의 집합투자재산이 제2항제1
호에 따라 투자대상기업의 지
분증권을 취득하기에 부족한
경우

2. 제2항제9호에 따른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3.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법 제249조의14제2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이 운용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지분증권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하며,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는 그 지분증권등을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 이를 처분할 수 있다.

1. 투자대상기업의 영업이 정지된 경우

2. 투자대상기업이 3개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3.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 설>

⑥ 법 제249조의14제2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이 운용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법 제249조의13제1항제3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된 자를 포함한다)는 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하며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는 그 지분증권을 처분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5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신 설>

⑦ 법 제249조의14제2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이 운용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등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

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그 다른 회사의 지
분증권등 전부를 다른 자(그 기
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출
자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같은
자로부터 출자에 의한 지배를
받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6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고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에는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
등의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
을 받은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증권시장에서 투자대상기업

의 지분증권등의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중단된 경우

2.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한 거

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
가 있는 경우

⑧ 그 밖에 법 제249조의14제2

<신 설>

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지분증권 등의 소유 및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249조의14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관을 위반하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벗어나는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업무집행사원의 고유재산 운용에 이용하는 행위
4. 특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나 투자목적회사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 또는 제3

⑨ -----

-----.

1.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4.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생략)

<신설>

5. (현행과 같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가. 투자대상기업의 선정이나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또는 선정 업무

나.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시기·방법 등을 결정하는 업무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이나 투자목적회사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업무

라.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신설>

7.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투자대상자산

의 취득·처분 등의 실행을 담당하는 직원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한 운용과 실행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8. 영 제271조의21제3항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를 하는 행위

③ (생략)

제271조의21(등록의 요건 등) ①

· ② (생략)

<신설>

⑩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71조의21(등록의 요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49조의1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운용전문인력”이란 상근임직원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u>고시하는 투자운용전문인력을 말한다.</u>
<u>③ ~ ⑤ (생 략)</u>	<u>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u>
<u>⑥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하고,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하며, 등록검토의 방법·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은 “<u>운용인력</u>”으로,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로 본다.</u>	<u>⑦ ----- ----- -----(- -----) ----- ----- -----(- -----) ----- ----- ----- ----- -----. ----- ----- ----- “<u>투자운용전문인력</u>”----- -----.</u>
<u>⑦ 법 제249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무집행사원은 운용중인 <u>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u>가 없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그 등록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u>	<u>⑧ ----- ----- ----- <u>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u>----- ----- ----- -----.</u>
<u><신 설></u>	<u>⑨ 법 제249조의15조제8항 전</u>

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및 이 영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보고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 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집행사원 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법 제249조의15조제9항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45일을 말한다.

⑪ 법 제249조의15조제10항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제271조의13제1항제2호의 사항을 말한다.

⑫ ----- 제11항까지 -----
----- 등록요건의 관하여 필요한 사항, 업무집행사원 등록-----
----- -----
----- -----
----- .

<p>1. <u>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u>의 유한책임사원(그 <u>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u>와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한책임사원으로 한정한다)의 <u>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u>에 대한 출자지분 현황</p>	<p>1. <u>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u> -----(-- <u>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u>----- ----- ----- -----) --- <u>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u>----- ---</p>
<p>2. 제1호의 보유 출자지분비율이 해당 <u>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u>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이상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 사항</p>	<p>2. ----- ----- <u>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u> ----- ----- -----</p>
<p>3. • 4. (생략) <u><신설></u></p>	<p>3. •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49조의20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란 법 제249조의18제2항 본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본다.</p>
<p>제271조의26(<u>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u>에 대한 조치) ① ~ ③ (생략)</p>	<p>제271조의26(<u>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u>에 대한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p>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 회
사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
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
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 8. (생략)

② ~ ⑤ (생략)

⑥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
모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49조
의2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남은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1. ~ 7. (생략)

⑦ 법 제249조의22제3항 전단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⑧ 법 제249조의22제3항 전단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이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⑨ (생략)

⑩ 법 제249조의22제6항 단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
에 관한 법률」에 -----

3.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
기구-----

1. ~ 7. (현행과 같음)

⑦ -- 제249조의22제3항-----

-----.

⑧ -- 제249조의22제3항-----

-----.

-.

⑨ (현행과 같음)

⑩ -----

<p>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 3. (생 략)</p> <p>4. <u>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u>의 존립기간 만료 등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p> <p>5. 투자대상기업의 합병 등으로 인하여 <u>사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u></p> <p>제271조의28(<u>창업 · 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u> 등에 대한 특례) ① ~ ④ (생 략) ⑤ 법 제249조의23제1항에 따른 <u>창업 · 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u>(이하 “<u>창업 · 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u>”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남은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 할 수 있다.</p> <p>1. ~ 6. (생 략)</p> <p>⑥ 법 제249조의23제3항 전단</p>	<p>----- ----- ---. 1. ~ 3. (현행과 같음) 4. <u>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u>----- ----- ----- 5. ----- ----- <u>투자자 보호</u>, <u>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u> ----- 제271조의28(<u>창업 · 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u> 등에 대한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창업 · 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u>(--- “<u>창업 · 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u>”----- -----)----- ----- ----- ----- ----- -----. 1. ~ 6. (현행과 같음) ⑥ -- 제249조의23제3항에서</p>
--	--

<p><u>에서</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p> <p>⑦ 법 <u>제249조의23제3항 전단</u>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p> <p>⑧ 법 제249조의2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창업 · 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관련 사항</u>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p>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4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 ----- ----.</p> <p>⑦ -- <u>제249조의23제3항에서</u> ----- ----- ----- ----- ----.</p> <p>⑧ ----- ----- ----- -----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창업 · 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u> ----- ----- 2. ----- <u>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u> ----- ----- ----- ----- <p>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① ----- ----- ----- ----- --.</p>
--	--

의 3-14-1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
는 1년을 말한다. 이하 이 호
에서 같다) 이내에 정당한 사
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아
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받거
나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금융투자업별로 영업
으로 보는 행위는 다음 각 목
의 구분에 따른다.

가. ~ 마. (생 략)

2. ~ 5. (생략)

<신 설>

⑤ • ⑥ (생략)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
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
(제57조, 제387조제1항부터 제
3항까지 및 별표 20에 따라 금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
--)

가. ~ 마. (현행과 같음)

3. ~ 6.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7.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제1호·제2호 및 제6호를 제외한 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 별정보의 처리) ① ----- (----- -----)

<p>제38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 17. (생 략)</p> <p><u>18. 제271조의15에 따른 경영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2014년 1월 1일</u></p> <p>19. ~ 25. (생 략)</p> <p>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p> <p>1. ~ 15. (생 략)</p> <p>16. 제271조에 따른 <u>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 범위: 2015년 1월 1일</u></p>	<p>제38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1. ~ 17. (현행과 같음) <u><삭 제></u></p> <p>19. ~ 25. (현행과 같음) ② ----- ----- -----(- -----) ----- -----.</p> <p>1. ~ 15. (현행과 같음) 16. ----- <u>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u>----- ----- -----</p>
---	--

<p>16의2. 제271조의13에 따른 경 <u>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u> 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 류: 2015년 1월 1일</p> <p>16의3. 제271조의21<u>제5항</u>에 따른 <u>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u> <u>자기구</u>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취소 요건: 2015년 1월 1일</p> <p>16의4. ~ 33. (생략)</p>	<p>16의2. ----- <u>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u> - ----- -----</p> <p>16의3. -----<u>제6항</u>----- --- <u>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u> <u>코</u> ----- -----</p> <p>16의4. ~ 33. (현행과 같음)</p>
---	--